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3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송언석・이종배・서지영

김상훈 · 김종양 · 김재섭

김석기 • 박준태 • 고동진

최은석・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 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중 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 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을 "이루어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편제24장"을 "제2편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무방해에 관한 범죄, 제24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 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 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 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 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 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 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 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 ----이루<u>어졌을</u>----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 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 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1. -----<u>제2</u>편제8장 공무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 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무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방해에 관한 범죄, 제24장---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